

변경대비표

1. 투자신탁의 명칭: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40 증권투자신탁(H)[채권혼합]

2. 변경 사유:

- 투자대상자산 추가(외화표시자산)
-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추가(외화표시자산) 반영"

3. 효력발생(예정)일: 2025년 05월 29일

4. 변경 주요 내용:

[신탁계약서]

항 목	정정 전	정정 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②<생략> 1.~3.<생략> <추가>	②<생략, 현행과 같음> 1.~3.<생략, 현행과 같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	<생략> 1.<생략> <추가> 2.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3.<생략> <추가>	<생략, 현행과 같음> 1.<생략, 현행과 같음>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3.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 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생략, 현행과 같음> 6.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생략> 1.~4.<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①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생략, 현행과 같음> 1.~4.<생략, 현행과 같음>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p>②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 제2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③제19조 제2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4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p> <p>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p> <p>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p> <p>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p> <p>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p> <p>③제2조제5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	-----------------------------------------------------------------------------------------------------------------------------------------------------------------------------------------------------------------------------------------------------------------	-------------------------------------------------------------------------------------------------------------------------------------------------------------------------------------------------------------------------------------------------------------------------------------------------------------------------------------------------------------------------------------------------------------------------------------------------------

[투자설명서]

항 목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업데이트>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업데이트>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p>가. 투자대상</p> <table border="1" data-bbox="322 1715 896 1886"> <thead> <tr> <th>투자대상</th> <th>투자비율</th> <th>투자대상 내역</th> </tr> </thead> <tbody> <tr> <td>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 매수 등</td> <td><생략></td> <td><생략></td> </tr> </tbody> </table>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 매수 등	<생략>	<생략>	<p>가. 투자대상</p> <table border="1" data-bbox="909 1715 1490 1960"> <thead> <tr> <th>투자대상</th> <th>투자비율</th> <th>투자대상 내역</th> </tr> </thead> <tbody> <tr> <td>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 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td> <td><생략, 현행과 같음></td> <td><생략, 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 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 매수 등	<생략>	<생략>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 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p>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②, ③, ④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생략></p> <p>1.~4.<생략></p> <p>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수익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②, ③,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추가></p>	<p>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②, ④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생략></p> <p>1.~4.<생략></p> <p>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수익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②,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계약 제18조제4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합니다.</p> <p>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p> <p>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p> <p>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p> <p>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p> <p>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p>								
<p>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p>	<p>가.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투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미달러)[주식] <table border="1" data-bbox="322 1406 895 1579"> <thead> <tr> <th>투자대상</th> <th>투자대상 내역</th> </tr> </thead> <tbody> <tr> <td>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 매수 등</td> <td><생략></td> </tr> </tbody> </table> <p><생략></p> <p>또한,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⑥, ⑦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투자대상	투자대상 내역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 매수 등	<생략>	<p>가.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투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미달러)[주식] <table border="1" data-bbox="908 1406 1481 1657"> <thead> <tr> <th>투자대상</th> <th>투자대상 내역</th> </tr> </thead> <tbody> <tr> <td>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 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td> <td><생략, 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p><생략, 현행과 같음></p> <p>또한,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규약 제18조제6호 내지 제7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11호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p>	투자대상	투자대상 내역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 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생략, 현행과 같음>
투자대상	투자대상 내역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 매수 등	<생략>									
투자대상	투자대상 내역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 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생략, 현행과 같음>									

		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나. 투자제한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예외	투자대상 종류	
	파생상품 투자	<p><추가></p> <p>같은 거래상대방과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p>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추가>	<추가>		<p>이해관계인과의 거래</p> <p>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p>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나. 투자제한	
	[모투자신탁 투자제한]			[모투자신탁 투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미달러)[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미달러)[주식]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예외	투자대상 종류	
	파생상품 투자	<p><생략></p> <p>같은 거래상대방과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추가></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p><생략, 현행과 같음></p> <p>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자하는 행위	
	집합투자 증권 투자	<추가>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다른 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 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 하는 행위	<추가>	집합투자 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 투자업자(법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 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 구(법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 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 <생략, 현행과 같음>	최초설 정일로 부터 1 개월간
	<추가>	<추가>		이해관계 인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 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 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 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13. 보수 및 수 수료에 관한 사 항	-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 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업데이트>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라. 운용자산 규모 -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